

FTA하에서의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

Settlement of Private Commercial Disputes under the FTA

김 상 호**
Sang-Ho Kim

〈 목 차 〉

- I. 서 론
- II. FTA 사적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약과 규칙
- III. 우리나라가 체결한 관련 협약상의 분쟁해결 구조
- IV. FTA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 V. 결 론

주제어 : 자유무역협정, 상사분쟁의 해결, 중재기관간 협력, 국제협약과 규칙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I.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 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의 GATT 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의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데 현재 발효 중인 197개의 지역협정 중 2000년 이후 106개가 체결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¹⁾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FTA 확대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및 FTA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²⁾ 최근 한국과 일본 간에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FTA체결을 위한 실무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4월부터 발효 중에 있는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최초의 FTA일 뿐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에 속한다. 한·싱가포르 FTA는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고축통 싱가포르 당시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양국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2004년 1월부터 양국간에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어 동년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싱가포르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양국은 협정문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고 2006년 3월 2일자로 발효되었다.

1) www.fta.go.kr/fta_korea/policy.php(2007.1.15 검색).

2)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에 따른 '한·중 공동성명'(2003. 7. 8. 베이징) 제10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아태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역내협력 과정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ASEAN 3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심화시켜 나가는 것을 지지하여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일간 협력강화가 동아시아 협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3국의 경제연구기관에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였다" 라고 선언하였다.

국가간의 경제협력이 투자협정 및 FTA 체결로 강화되면서 주요 문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은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적 상사분쟁의 공정·신속한 해결이다. 이는 역내 간 또는 특정 국가 간의 경제교류가 무역, 투자관련 협정 및 FTA로 결속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경제적 장벽이 무너지는 한편으로 물품, 서비스 및 자본의 거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적 상사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역, 투자 등 국제경제교류의 촉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 당사국간에 체결되어 있는 FTA 및 투자관련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구조와 중재기관 간에 체결되어 있는 중재협정, 또한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분쟁해결 실무에 대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간의 지역주의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FTA 하의 ‘사적 상사분쟁’(private commercial dispute)³⁾ 해결의 메커니즘을 투자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과 규칙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관련 협정상의 분쟁해결 구조를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주요 대상국가, 그리고 한·칠레 FTA 순으로 집중 분석하였다. 이어 FTA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해 국내 유일의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중재협정을 통한 개선방안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사적 분쟁해결기구인 CAMCA 방식의 분쟁해결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II. FTA 사적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약과 규칙

1. 개 관

국제중재는 상이한 법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분쟁당사자들이 중립성이 보장된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FTA나 투자관련 조약으로부터 발생하

3) 투자관련 협정이나 FTA하의 분쟁해결의 주된 수단은 ‘중재’(arbitration)이다.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私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私人인 중재인의 관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사적 상사분쟁”에 대한 것으로 ‘사적’(private)이란 “사법상의 또는 사법적 성질을 가진” 의미로 사용키로 한다. ‘商事’(commerce)란 중재제도를 논함에 있어 상사중재와 비상사중재를 구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상사에 관한 중재를 상사중재로, 그 외의 중재를 비상사중재 또는 민사중재라고 구별하여 사용한다. UN차원에서 제정되어 우리나라 개정 중재법(현행 중재법)의 모델이 된 UNCITRAL 모델중재법(제1조 제1항 각주)에서는 상사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즉, ‘商事’의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통상의 무역거래, 물품판매계약, 투자”를 포함하여 각주에서 예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상사’라는 용어는 계약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업적 성격의 모든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광의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소송보다 더 많이 활용되어 왔다.

중재, 특히 상사중재제도의 장점은 당사자자치이며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한 운영이기에 근본적으로 私人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나 투자관련 조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은 통상의 중재제도로 私人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분쟁발생의 원인이 순수한 사인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간의 양자적 혹은 다자적 조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FTA나 투자관련 국제조약에서 발생하는 사적 상사분쟁(private commercial disputes)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ICSID협약과 뉴욕협약이 대표적이며 중재규칙으로는 UN차원에서 제정한 UNCITRAL 중재규칙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ICSID협약

전통적으로 국제상거래라고 하면 유형상품의 거래만을 일컬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합작투자 또는 자본투자와 같은 무형의 투자거래도 포함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국제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자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자본의 보호는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투자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의 공정·신속한 해결은 국제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의 주도로「일방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이 탄생하게 되었다.⁴⁾ 이 협약을 ICSID협약 또는 워싱턴협약(Washington Convention)이라고 하는데 1965년 3월 18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채택되었고 1966년 10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투자분쟁국제해결본부(ICSID :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중재는 한 국가의 법을 준거하고 그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독립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혀 독립된 별개의 중재에 관한 준거법을 제정한 것이 ICSID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66년 4월 18일에 서명한 후 1967년 2월 21일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동년 3월 23일 우리나라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와 싱가포르 모두 ICSID협약의 가입국이다.

한국이나 싱가포르 및 칠레는 자국의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의 자본을 도

4) Hans Smit, Vratislav Pechota, The World Arbitration Reporter Vol.1, New York : Transnational Juris Publications, Inc., 1991, p.71.

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도입에는 정부베이스의 외국자본의 도입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외국의 투자자와 자본도입국의 정부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한국과 칠레의 국내 중재기관에 있다면 공정성과 사법적 한계성 등으로 중재절차 진행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은 오늘날 국제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정과 중재의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ICSID의 조정이나 중재는 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CSID의 절차는 UN차원에서 제정한 UNCITRAL 조정 및 중재규칙상의 절차와 매우 유사하다.⁵⁾ UNCITRAL 규칙은 특히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무역 이외에도 기술이전 및 합작기업의 책임 등과 관련된 복잡한 분쟁해결에 적합하다.⁶⁾

ICSID협약에서는 계약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배척하고 있다.⁷⁾ ICSID중재가 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일단 중재에 합의한 이상 관할권에 대한 동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부의 주관하에 중재가 분쟁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므로 중재에 동의한 이상 계약국은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⁸⁾ 모든 계약국은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그 판정에 의하여 과하여진 금전상의 의무를 자국법원의 종국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⁹⁾

3. UNCITRAL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4월 28일 UNCITRAL¹⁰⁾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된 41개조로 구성된 중재규칙이다. 동 규칙은 범세계적 이용을 위해 고안되었는데 원래 임시적 중재(ad hoc arbitration)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제도적 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를 배타적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UNCITRAL 중재규칙이 최초로 언급된 중재협정은「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Optional

5) William F. Fox, Jr., *International Commercial Agreement*, Deventer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8, p.255.

6) 1979년 미국과 중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에서는 UNCITRAL 중재규칙의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구 소련(러시아로 승계) 및 홍콩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서도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7) ICSID협약 제27조 제1항.

8) ICSID협약 제26조.

9) ICSID협약 제 54조 제1항.

10) UNCITRAL은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국제무역법위원회)의 약칭으로 1966년 제21차 UN총회 결의로 설립된 UN의 산하기관이다.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 또한 1984년 미국중재협회와 헝가리상업회의소간에 체결된 같은 명칭의 중재협정에서도 중재절차에 관하여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와 소련간에 체결되어 러시아로 송계된 한·소 투자보장협정에서도 일방 계약당사국과 타방 계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 따라서 오늘날 UNCITRAL 중재규칙은 보편적인 국제적 중재규칙으로서 특히 동서국가간의 중재에 널리 이용되어왔다.

UNCITRAL 중재규칙은 범세계적 보편화를 위해 UN차원에서 노력한 결실의 산물이다. 이를 위해 동 규칙의 초안 작업시 뉴욕협약, 워싱턴협약, 모스크바협약과 같은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고려하였다. 또한 UNCITRAL 중재규칙은 현존하는 국제적 중재규칙도 고려하였는데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규칙과 ECE(유럽경제위원회) 규칙이나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미국중재협회 중재규칙, 소련상공회의소 중재규칙도 고려하였다.¹³⁾

4. 뉴욕협약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제간 무역의 증대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국제적 상거래가 일반화됨에 따라 이들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종래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당하게 되었고 대신 상사중재에 의한 해결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은 상사중재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상사중재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간의 중재법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범세계적 차원에 있어서의 상사중재제도의 원활한 운영, 특히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UN차원에서 행해졌는데 그 대표적 산물이 뉴욕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협약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계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며 ② 한국법상 商事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¹⁴⁾

뉴욕협약이 지향하는 기본정신은 국제무역의 원활하고 신속한 교류를 촉진하는데 있다.

11) 1977년에 체결된 이 중재협정의 체결 당사자는 미국중재협회와 소련연방상공회의소이다.

12) 한·러 투자보장협정 제9조 제4항 참조. 러시아는 소련붕괴 이후인 1992년 과거 소련의 거의 모든 정치·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소련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과 무역협정이 포함된다.

13) Piter Sanders,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ICCA Yearbook Vol. II(1977), pp.173-174.

14) ①을 '相互主義 유보선언'이라고 하며 ②를 '商事限定 유보선언'이라고 한다.

국제무역을 위시하여 국제상거래에 수반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한 절차, 경비의 절약, 기업 비밀의 유지, 전문가에 의한 심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중재제도에 부탁하여 해결토록 권장하고 그 보장책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각국 국내법의 까다로운 규정들을 대폭 규제하는데 있다.

또한 뉴욕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진 분쟁 당사자가 그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약국의 집행거부 사유를 대폭 제한하고 있다.

뉴욕협약 제4조 제1항에서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얻기 위하여 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시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판정원본(또는 그 등본)과 ② 중재합의(계약)의 원본(또는 그 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받기 위하여 집행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적극적 요건은 중재판정문과 중재합의(계약)서만 제출하면 되고 그 순간 이후 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거증책임은 그 상대방에게 있다.

우리나라와 칠레 및 싱가포르 간에는 FTA 발효 이후 현재까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해 뉴욕협약이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장 개방에 따라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규모가 증대되면 그에 비례하여 뉴욕협약의 적용빈도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우리나라가 체결한 관련 협약상의 분쟁해결 구조

1. 동북아시아

(1) 한·중 투자보장협정

한국과 중국 양국은 수교직전 양국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동 협정에서는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¹⁵⁾

한·중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투자분쟁의 당사자는 일방국가의 투자자와 타방국가의 정부이다.¹⁶⁾ 따라서 협정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간의 투자관련 분쟁은 투자보장협정상외의 분쟁해결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통상의 상사중재나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10조 제1항에서는 투자분쟁에 관하여 “투자자와 관련한 일방국가 투자자와 타방국가 정부 간의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투자분쟁을 좀 더

15) 1992년 7월 26일자로 발효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의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와 중국의 중국국제상회이다. 이 협정도 동년 8월 24일 양국 수교이후 정부차원의 조약으로 격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6)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10조 제1항.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보상금액에 관한 일방국가의 투자자와 타방국가의 정부 또는 동 타방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상의무를 가진 여러 기관간의 분쟁”이라고 하였고 같은 항 하단에서는 “일방국가 투자자와 타방국가 정부 간의 기타 문제에 관한 어떠한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투자보장협정에서 예상하고 있는 투자분쟁은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 및 기타 투자관련 분쟁이다.

여기서의 보상금액이란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국유화나 수용시 이루어지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자본수출국의 국민 및 회사의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 국유화 기타 그에 준하는 직간접의 여러 조치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투자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액이 지불되어야함과 동시에 공공의 목적, 무차별, 적법절차 및 투자자에 대한 약속의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중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중국이 ICSID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중국이 유보통고를 통하여 ICSID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분쟁을 제외한 모든 분쟁은 일방국가의 투자자 또는 타방국가의 정부의 요청에 따라 ICSID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분쟁해결기구인 ICSID에 회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중국은 ICSID협약에의 가입을 미루어 오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가입하였다.¹⁸⁾

ICSID협약에서는 ICSID중재에 대한 동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른 구제방법의 배제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⁹⁾ 따라서 자본도입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일방체약국의 국민이 분쟁을 ICSID에 제출한 후에 자본도입국이 자국법원에서 투자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ICSID협약 및 투자보장협정의 위반이 된다. 그러나 ICSID협약에서는 국가가 가입조건으로 ICSID관할권의 제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보장협정에 의하여 ICSID에의 중재가 가능한 분쟁의 범위는 중국의 가입조건에 의하게 된다.²⁰⁾

(2) 한·일 투자협정

‘투자협정’은 타방국가에 행해진 투자에 대해 과실송금과 투자원금 회수 등을 보장하는 등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장치로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와 맺고 있는 투자보장협정보다 넓은 개념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며 투자를 하는

17)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10조 제10항.

18) 중국은 1990년 2월 9일 ICSID협약에 서명하였고 1993년 1월 7일 비준서를 이 협약의 수탁기관에 기탁하였다. 그리하여 동 협약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3년 2월 6일자로 중국에 대한 ICSID협약이 발효되었다.

19) ICSID협약 제26조.

20) ICSID협약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중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가입조건으로 국유화나 수용에 따른 보상 관련 분쟁에 한해서 ICSID의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ICSID에 통고하였다.

단계부터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등 투자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몽쳐 무역장벽을 허무는 지역주의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일 본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투자협정이자 앞으로 한·일간 FTA 성사를 위해 선행적 성격의 지역경제협정이 될 한·일 투자협정은 1998년 11월 13 일 한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정체결의 추진에 합의한 이래 그간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02년 3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었고 2003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²¹⁾

그간 우리나라는 교역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양국간 투자협정을 하나도 체결하지 못했다. 그 결과 대외통상정책이 GATT와 WTO 등 다자간 자유무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한·일 양국간에 투자를 동반한 교역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소재산업의 기술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前文, 23조 및 부속서로 구성된 한·일 투자협정에서는 제15조에서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투자분쟁의 당사자는 투자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침해에 의 하거나 그 침해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타방채약국의 투자 자”와 투자를 유치한 “일방채약당사국”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협의나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되 그 해결이 실패하 면 투자자는 다음 방안중 하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합 의된 분쟁해결절차가 없으면 ① 양 채약당사국이 ICSID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ICSID 에 제기하거나 ②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하거나 ③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재기관이나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각 채약국은 위의 방식에 따라 투자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 의하며 내리진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채약당사국은 동 중재판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며 자국의 영역안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동 중재판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2. 동아시아

(1) 한·홍콩 투자보장협정

우리나라가 홍콩정부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²²⁾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협정 전문에서 양국

21) 조약 제1614호로 발효중인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투자의 자유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Liberalizat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이다.

22) 1997년 6월 30일 한국과 홍콩간에 서명된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대한민국정부와 홍콩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ong Kong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이다. 전문 및 14개조로 구성된 이 협정은

정부는 “일방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타방 지역안에서의 투자증대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자 희망하며, 그러한 투자의 촉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합의가 개별기업의 창의력을 고무하는데 이바지하며 양 지역에서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여” 협정체결에 합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홍콩투자보장협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토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주권하에 있는 영토를 뜻하며, 홍콩의 경우 홍콩섬, 구룡반도 및 신계지(New Territories)를 포함한다²³⁾.

한·홍콩투자보장협정 제9조 제3항에서는 일방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면 그 분쟁은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며, 만약 당사자가 상기 기간내에 동 절차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분쟁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홍콩투자분쟁의 당사자는 먼저 어떤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그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하면 동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실패하면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UNCITRAL 중재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는 무엇인가? 아마도 분쟁당사자가 무난히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ICSID협약의 중재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

우리나라는 1993년 베트남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양국간 투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투자보장협정상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3년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²⁴⁾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부인되었던 내국민대우를 새로이 규정했고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세한 투자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번 협정에서 “투자자”라 함은 타방계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투자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자연인’이라 함은 각 계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법인’이란 책임의 유한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기업, 당국, 재단, 회사, 조합, 상사, 설립체, 조

1997년 7월 30일 발효하였다.

23) 한·홍콩 투자보장협정 제1조 제1항.

24) 2003년 9월 15일 서울에서 서명됨으로써 개정된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은 2004년 6월 5일 발효하였다. 이 개정 협정은 전문, 3장, 22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있다.

직 및 협회 등 계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되고 법인으로 인정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²⁵⁾

제2장 제1절(제8조-제16조)에서는 일방계약당사국과 타방계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협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일방계약당사국과 타방계약당사국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① 분쟁당사자인 일방계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청구하거나 ② 분쟁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된 적용 가능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르거나 ③ 중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²⁶⁾

일방계약당사국 투자자는 타방계약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구제를 위해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계약당사국의 기업을 위하여 타방계약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동 기업의 손해나 손실의 구제를 위해서도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²⁷⁾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경우 준거하는 협약이나 규칙으로는, ① 분쟁당사자인 일방계약당사국과 투자자의 국적국인 타방계약당사국이 모두 ICSID협약의 당사국일 경우에는 동 협약, ② 분쟁당사자인 일방계약당사국과 투자자의 국적국인 타방계약당사국의 일방만이 ICSID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동 협약의 추가편의규칙, ③ UNCITRAL 중재규칙을 규정하고 있다.²⁸⁾

중재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국가에서 행하여지며 중재에 회부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상사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²⁹⁾

중재판정은 당해 분쟁당사자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중재판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각 계약당사국이 분쟁당사자로 참가한 소송에서 부여된 판정을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한다. 또한 양 계약당사국이 ICSID협약 또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투자자는 동 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³⁰⁾

(3)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2006년 3월 2일자로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가 2003년 칠레와 체결한 FTA에 이어 두 번째이며 단일 협정문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체결한 1,670여건(2005

25)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 제1조 제2항.

26)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 제8조.

27)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 제9조 제1항.

28)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 제9조 제4항.

29)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 제13조.

30)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 제16조 제2항, 제5항-제6항.

년 8월 현재)의 양자 조약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³¹⁾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제10.19조에서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분쟁의 당사자는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이다.

먼저 분쟁의 당사자는 협의 및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 모색하여야 한다(제2항). 그러나 분쟁이 협의 및 협상 요청일로부터 6월내에 해결될 수 없고 당해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또는 사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분쟁의 해결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쟁을 해결한다. 즉, 당해 투자자는 그 분쟁을 ① 양 당사국이 ICSID협약의 당사국일 경우에는 ICSID에 제기하거나, ②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거나, 또는 ③ 그 밖의 중재기구, 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 번째 FTA가 된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 양국이 FTA를 통하여 서로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가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되어 한·싱가포르 FTA상의 특혜관세를 누리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최대의 경제협력사업지구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선례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3년 12월에 서명되어 2004년 4월부터 발효중인 한·칠레 FTA하에서의 투자분쟁의 당사자는 “분쟁 투자자와 분쟁 당사국”이다. 한·칠레 FTA에서는 투자관련 분쟁으로 인해 중재에 회부된 청구가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²⁾ 한·칠레 FTA에서도 분쟁사건을 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먼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나 협상’(consultation or negotiation)을 통해 우의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³³⁾

한·칠레 FTA(제10.26조)에서는 중재동의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는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청구의 중재회부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중재동의와 분쟁 투자자에 의한 청구의 중재회부는,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위한 ICSID협약 제2장(관할권) 및 ICSID의 추가편의규칙(Additional Facility Rules), 그리고 뉴

31) 한·싱가포르 FTA는 총 22장 211개조, 20여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분량은 총 1,687면에 이른다.

32) 한·칠레 FTA 제10.40조 제7항.

33) 한·칠레 FTA 제10.22조.

육협약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이란 ‘서면합의’에 관한 사항이다. 제1항에서는 중재동의를 대상 및 체약국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은 일정한 법률관계(a defined legal relationship)에 관련하여 발생된 것에 한정되며,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현존하는 분쟁이든 또는 장래 발생할 분쟁이든 이를 불문하고 각 체약국은 당사자간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해야 한다. 제2항에서는 중재동의를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서면에 의한 합의’(agreement in writing)란 계약문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 제3항은 방소항변(妨訴抗辯) 및 직소금지(直訴禁止)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간에 위의 중재동의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체약국의 법원은 중재동의를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중재에 부탁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뉴욕협약 가입국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중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장소의 결정은 ① 중재가 ICSID 추가편의규칙 또는 ICSID협약을 따른 것일 경우에는 ICSID 추가편의규칙에 따라서 결정하며 ② 중재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를 경우에는 동 규칙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였다.³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없으면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분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위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³⁵⁾ 그러나 당사국이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분쟁 당사자들이 의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ICSID 사무총장이 중재위원 임명권자(appointing authorities)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⁶⁾

즉, 사무총장은 청구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면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중재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의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즉, 사무총장은 분쟁당사자 어느 일방 당사국의 국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의장명부에서 의장을 임명한다.³⁷⁾ 그러나 그러한 의장이 부재할 경우 사무총장은 ICSID 중재위원 패널(Panel of Arbitrators)에서 의장을 임명한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분쟁당사자와 당해 사안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

34) 한·칠레 FTA 제10.34조.

35) 한·칠레 FTA 제10.27조.

36) 한·칠레 FTA 제10.28조.

37) 한국과 칠레 양국은 이 협정 발효일에 ICSID협약과 동 추가편의규칙, UNCITRAL 중재규칙상의 자격에 부합하고, 국제법 및 투자문제에 경험이 있으며 어느 일방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 중에서 30명으로 구성되는 의장명부(roster of presiding arbitrators)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명부의 구성원은 양국이 상호합의로 임명한다.

서 분쟁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재심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체 없이 판정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한·칠레 FTA에서는 분쟁 당사자에 의한 최종판정의 집행요구 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ICSID협약에 따라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①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어느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이나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할 때, 또는 ② 판정의 수정이나 취소절차가 완료된 때에 판정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ICSID 추가편의규칙이나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①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보류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또는 ②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보류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였거나, 또는 허용하였거나 더 이상의 상소가 부재할 때 판정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일방 분쟁 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³⁸⁾는 중재 당사자였던 투자자가 소속하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설치한다. 패널 절차에서 투자자 소속 국가는, ① 최종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그리고 ② 당해 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준수하거나 따르도록 하는 권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ICSID협약이나 뉴욕협약에 따라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추구할 수 있다.

IV. FTA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1. 중재기관간 협력 강화

(1) 협력의 필요성

세계적 추세로 보면 투자 및 무역의 촉진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투자보장협정, 투자협정, FTA체결 건수는 급격히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를 보더라도 한·중·일을 역내권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경제교류는 FTA처럼 지역경제권의 통합움직임

38) 한·칠레 FTA에서는 협정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와 협정 이행과 관련한 행정·기술적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국'(Secretariat)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위원회의 관장업무로는, ① 협정의 이행과 적절한 적용의 감독 ② 협정 적용결과에 대한 평가 ③ 산하 위원회 및 전문가그룹 감독 ④ 기타 당사국이 회부한 사항이다.

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투자, 무역 등 역내의 경제교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무역 등 역내의 경제교류가 증대될수록 이와 관련된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에 의한 해결이 촉진되는데 거래당사자가 분쟁해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삽입하는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무상 중재조항의 요소 중 당사자가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에 관한 합의이다.

중재지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제출, 심문예의 출석,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선호하는 중재지를 고집하다 보면 본계약 자체의 체결이 지연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계약을 순조롭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지를 사전에 확정해 두는 대신 양 당사자 소재국의 중재기관간에 체결되어 있는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상의 중재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피차 유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양국의 중재기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중재지를 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중재협정의 주된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한·싱가포르 FTA와 한·칠레 FTA하에서 발생하는 사적 상사분쟁 사건의 일정 부분도 한국, 싱가포르, 칠레의 중재기관에서 해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중재기관간의 중재협정을 통한 분쟁해결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예컨대, 한·싱가포르 FTA와 한·칠레 FTA에 따른 투자관련 분쟁사건 중 일부는 ICSID협약에 따라 ICSID중재로 해결되었지만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한국, 싱가포르, 칠레의 중재기관에서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해서나 기타의 국제적 중재규칙에 의해 투자관련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재기관간 중재협정 체결을 통한 분쟁해결의 촉진방안을 보면 ‘중재지 결정’ 문제를 주된 이슈로 다루는 방안이 있고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시설 제공, UNCITRAL 중재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중재협정을 통해 이를 고찰하기로 한다.

(2) 협력의 방향

1) 중재지를 피신청인 국가로 하는 중재협정

이 협정에 따르면 ‘중재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지를 피신청인의 나라로 하며 피신청인 소속 국가의 중재기관에서 동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중재협정 중 일본, 대만, 태국, 인도, 가나, 인도네시아, 덴마크 및 1990년에 들어와서 체결한 중국, 러시아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 등 북방교역 대상국가의 중재기관과 체결한 협정이 이에 속한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이 1995년에 싱가포르

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와 체결한 중재협정도 이에 속하는데 주된 내용은 ‘중재지’ 결정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간에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를 중재지로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과 싱가포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중재지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재신청인이 한국 당사자이고 피신청인이 싱가포르 당사자라면 중재절차는 싱가포르의 SIAC에서 진행된다는 식이다.³⁹⁾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해서 중재지가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될 경우의 장점으로는 분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제반 물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증거제출 및 중재판정의 집행 등에 있어서 편리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피신청인이 분쟁을 야기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청인주의가 채택되면 상당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되기 이전에는 소송 제기나 중재신청 등의 남발을 억제케 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는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국가에서 자신의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주의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특히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물품의 이전이 행해지고 난 후에 품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주의는 비합리적이다. 예컨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된 물품을 검사한 결과 현저한 품질불량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면 피신청인주의에서는 매도인의 소재지에서 중재가 진행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분쟁물품은 원고에 해당하는 중재신청인 소재국가에 있으므로 중재인이나 검사인으로 하여금 분쟁물품에 대한 불량확인이나 검사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분쟁물품이 변질되기 쉬운 부패성 물품(perishable goods)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2) 보다 강화된 협력 방식

중재제도의 실무에서 볼 때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의 지위에 있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설중재기관은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해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39) 한·싱가포르 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in which the respondent has its place of business. In case the responde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under the Rules thereof. In case the respondent is a Singapor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under the Rules thereof. The award to be rendere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이 계약으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분쟁, 논쟁 혹은 의견차이는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중재지는 피신청인의 영업소재지국으로 한다. 피신청인이 한국 기업인 경우에는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동 중재원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된다. 피신청인이 싱가포르 기업인 경우에는 중재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서 동 센터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된다.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인 명부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중재협정을 통해 중재판정부 구성에 상호 협조하는 것도 분쟁해결의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A국의 중재기관에 등록된 중재사건의 중재지가 B국으로 되어있는 경우 B국의 중재기관이 해당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추천하는 경우이다. 이와 함께 B국의 중재기관은 동 중재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심리를 개최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속기나 통역 등 중재절차 진행상의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는 상거래가 복잡·대규모화되고 국제화가 촉진되면서 그에 비례하여 중재기관 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대표적인 것으로 한·ICC 중재협정과 한·오스트리아 중재협정이 있는데 FTA하의 중재기관간 협력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한·ICC 중재협정에 따른 협력방식이다.

이 중재협정은 중재시설제공 및 중재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측과 1978년에 체결하였다.

한-ICC협정의 당사자는 4개 기관이다. 즉,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Court of Arbitration) 및 국제상업회의소 한국 국내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ttee)이다. 이 중 협정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다.

한·ICC중재협정의 특징은 ICC 중재사건의 진행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중재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이 ICC 중재법원의 중재업무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로서, ① ICC 중재법원의 요청에 따라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추천하며⁴⁰⁾, ② 중재지가 서울로 된 경우 중재심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실에서 열리며 대한상사중재원은 ICC 중재인에게 그 자신의 중재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재관리상의 지원(속기, 통역 등)을 하도록 하였다⁴¹⁾.

이 협정과 유사한 형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아·아법률자문위원회(AALCC)⁴²⁾ 산하의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및 카이로 지역중재센터와 체결한 중재협정에서도 발견된다. 이들 협정에서는 중재판정의 집행, 특히 동 지역중재센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주관 하에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의 중재판정집행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하기

40) 한·ICC 중재협정 제5조.

41) 한·ICC 중재협정 제6조.

42) AALCC는「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의 영문명칭인 The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의 약칭이다. AALCC는 정부차원의 국제기구로서 법률문제에 관하여 회원국 정부의 자문과 법률분야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역내 국가간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1956년에 창설되었다. AALCC는 당초 인도 등 제3세계의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후 남북한 및 중국이 가입하여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명실상부한 국제적 협력기관이 되고 있다.

로 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중재협정의 당사자 중 ICC 중재법원과 AALCC 산하의 쿠알라룸푸르 및 카이로 지역중재센터는 특정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전형적인 무국적의 국제중재기관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둘째, 한·오스트리아 중재협정에 따른 협력방식이다.

1996년에 체결된 이 협정체결의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오스트리아 연방상의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및 동 연방상의 국제중재센터(International Arbitral Centre)이다. 협정의 당사자들은 협상(negotiation), 알선(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사실조사(fact-finding), 간이심리(mini-trial), 중재(arbitration) 기타 적절한 절차에 의해 혹은 이들 분쟁해결 수단의 결합에 의해 무역, 투자 등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일본이나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의 각 중재기관과 체결한 협정과는 달리 협정체결 양국의 거래 당사자만이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의 거래당사자가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오스트리아와 한국 내에 국제상사중재를 위한 센터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협정체결의 당사자들은, ① 알선인(mediators), 조정인(conciliators), 중재인(arbitrators)의 명부(panels)를 각각 유지·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과 전문가를 선정하며 ②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바 여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적 서비스, 증거기록, 번역, 문서의 보관 등을 포함한다. ③ 필요한 경우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 선정권자(appointing authority)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협정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 협정체결의 당사자들 간에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 선정권자로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제3국 중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된다.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으로서 국제연합의 기관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동서국가 간의 중재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1984년 9월 7일「미·헝가리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1985년 10월22일에「미·불가리아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1988년 3월 15일에는「미·폴란드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그리고 1989년 3월 29일에는「미·체코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각각 해당국의 중재기관과 중재협정 형식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이상 4개의 협정 모두 미국중재협회와 해당국가의 중재기관⁴³⁾ 및 중재인 선정권자로서

43) 헝가리에는 헝가리상업회의소(Hungarian Chamber of Commerce), 불가리아에는 불가리아상공회의소(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폴란드에는 폴란드대외무역회의소(Polish Chamber of Foreign Trade), 그리고 체코에는 체코상공회의소(Czechoslovak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중재

의 오스트리아 연방상의간의 3자 협정(tripartite agreement)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협정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중재지로 고정시켜 놓은 반면⁴⁴⁾ 폴란드 및 체코와의 협정에서는 중재지를 원칙적으로 비엔나로 하되 당사자합의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협정에서는 공히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재 절차에 적용되는 절차적 준거규칙으로 하였다.

한·오스트리아 중재협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선정권자로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즉, 중재원이 한·오스트리아 중재협정에 따라 단독 및 의장중재인을 선정해 주도록 요청을 받으면 중재원은 UNCITRAL 중재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것이다. 중재원은 중재규칙에 따른 기존의 중재인 선정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UNCITRAL 중재규칙 제7조에 의하면 3인의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만약 어느 당사자가 자기 측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면 타방당사자는 선정권자에게 제2중재인을 임명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서 제2중재인 임명시 선정권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원은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고 명부 외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2. CAMCA 분쟁해결 방식의 도입 검토

(1) 창설 배경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 아메리카 상사 중재·조정센터)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하여 창설된 사적분쟁 해결기구이다. 이 기구는 NAFTA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NAFTA 회원국인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의 공동노력이 결실을 맺어 1995년 12월에 창설되었다.

국제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적 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저렴·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국제간의 무역, 투자 등 국제상거래의 증대와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제상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사적분쟁을 법원에 호소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분쟁사건이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알려져 있는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기관으로서의 협정체결의 당사자이다.

44)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에서도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중재지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

수단인 중재나 조정에 의해 해결되기를 원한다.

NAFTA의 경우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분쟁을 소송이 아닌 ADR로 해결하기 위해 그 법적 근거를 NAFTA내에 두게 되었다. 이는 NAFTA 역내 간 경제교류에 따른 제반 장벽이 없어지면서 물품, 서비스 및 자본거래가 급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사적 분쟁의 해결촉진이 현안의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2) 법적 근거

NAFTA는 역내 국가간 사적 상사거래(무역,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인 ADR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NAFTA 제2022조이다.

■ NAFTA 제2022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제1항 : Each Party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use of arbitration and other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etween private parties in the free trade area.(각 회원국은 자유무역지대내의 사적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 이용되도록 최대한 촉진한다.)
- 제2항 :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provide appropriate procedures to ensure observance of agreements to arbitrate and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such disputes.(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분쟁사건에서 중재합의가 준수되도록 하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되도록 적절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 제3항 : A Party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2 if it is a party to and is in compliance with the 195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r the 1975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어느 회원국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958)’이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1975)’의 가입국으로 이를 준수하고 있다면 상기 2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4항 :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n Advisory Committee on Private Commercial Disputes comprising persons with expertise or experience in the resolu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Committee shall report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general issues referred to it by the Commission respecting the availability, use and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nd other procedures for the resolution of such disputes in the free trade area.(자유무역위원회는 사적 상사분쟁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데, 동 자문위원회는 사적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 기타 절차의 이용가능성, 이용 및 효과에 관하

여 자유무역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일반적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위원회에게 보고하고 권고해야 한다.)

(3) 조직 및 운영

CAMCA 창설의 법적 근거는 제공되었지만 그 창설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NAFTA 회원국들은 그 창설의 주역을 역내 회원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으로 하고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CAMCA를 창설하도록 하였다.

CAMCA 창설을 주도한 역내의 중재기관은 미국의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미국 중재협회),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브리티시 컬럼비아 국제상사중재센터) 및 Quebec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퀘벡상사중재센터), 멕시코의 Mexico City National Chamber of Commerce(멕시코 시상업회의소)의 4개 중재기관이다.

CAMCA의 이사회(Governing Council)는 12명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이 4명을 추천하는데 추천시 추천국가 해당 중재기관의 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CAMCA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 요금 및 절차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CAMCA는 또한 국제무역과 분쟁처리에 관한 국제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조정인 및 중재인명부'(Panel of Arbitrators and Mediators)를 유지·관리한다. 동 명부에는 각 회원국이 12인씩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CAMCA는 NAFTA 역내의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창설된 다국적 성격을 가진 상설 기관으로 통일된 규칙과 정책 및 행정절차를 가지고 운영된다. 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은 CAMCA 창설을 주도한 상기 중재기관의 어느 사무소에서도 접수될 수 있다.

(4) CAMCA의 규칙과 분쟁해결조항

1) 개요

CAMCA의 분쟁처리 주요업무는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이다. '조정'은 구속력이 없는 절차로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공정한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반면, '중재'는 분쟁의 최종해결을 위한 절차로 당사자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 절차이다.

역내간 경제활동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해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그 대상은 투자 및 무역, 건설, 고용, 금융, 프랜차이즈, 지적재산권, 제조, 오일 및 가스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다.

CAMCA의 조정규칙은 당사자가 동 규칙에 따라 조정을 받겠다는 합의를 하면 적용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절차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재규칙도 조정규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CAMCA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

를 하면 적용된다. 중재규칙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CAMCA의 중재규칙이 중재에 적용되는 법의 강행규정과 충돌하게 되면 동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이는 NAFTA 회원국의 중재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2) 조정규칙

조정규칙은 3장 및 18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인의 임명을 위해 ‘다국적 조정인명부’(Multi-national Panel of Mediators)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인의 권한은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해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조정의 성공을 위해 조정인은 당사자들과 개별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고 분쟁해결을 위한 조언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당사자가 동의하면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것이므로 당사자와 대리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당사자 및 조정인의 승인을 받아 참관할 수 있다. 조정인과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조정절차가 기본적으로 사적분쟁에 속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조정절차에서는 속기록(stenographic record)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조정은,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합의한 경우, 조정인이 향후의 조정노력이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서면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린 경우에 종료된다.

CAMCA의 조정규칙에서는 면책조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CAMCA 사무국과 조정인을 사법절차와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조정규칙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조정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련된 해석과 적용은 조정인이 하며 그 외의 사항은 CAMCA 사무국에 의하여 해석되고 적용된다.

3) 중재규칙

중재규칙은 3장 및 39조로 구성되어 있다.

CAMCA는 중재판정부가 다국적 인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 중재규칙에 의하여 중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1인으로 하되 사무국은 사건의 복잡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3인으로 판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기피신청한 경우 타방 당사자가 동의하면 해당 중재인은 기피된다. 중재인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중재인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인 기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국이 재량으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해 중재에 참여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 및 인적사항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중재장소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먼저,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 20일내에 선호하는 중재장소에 관한 주장과 근거를 중재장소를 결정하는 ‘중립위원회’(Neutral Locale Committee)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립위원회는 당사자들과 동일한 국적의 인사들로 구성되지만 위원장은 제3국적의 인사이어야 한다. 중립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 및 중재사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장소를 결정하게 되는데 동 결정은 최종적이다.

중재언어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중재조항이 포함된 서류의 언어로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언어로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존재여부 등 자신의 중재관할권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의 유효성과 존재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조항은 다른 조건들과 독립된 합의로 취급된다.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내려진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인 것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판정문에는 판정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판정문은 중재인의 과반수가 서명하면 효력이 있다. 만약 3인으로 판정부가 구성되었고 그 중 1인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동 서명을 하지 않은 중재인에게 서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기록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문은 법률에 의해서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다. 만약 중재판정이 내려진 회원국의 중재법에서 판정문이 법원에 등록될 것을 요구하면 판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판정부는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잠정적, 중간적 또는 부분적 명령이나 판정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법과 규칙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판정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을 적용한다. 계약 등의 해석에 있어서는 동 계약에 적용되는 거래나 무역의 관행이나 관습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판정부는 합의된 내용을 판정문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재판정의 이유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재규칙에서도 조정규칙에서와 같이 사무국과 중재인을 사법절차와 손해배상책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중재규칙에서는 소액사건의 신속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중재신청(또는 반대신청) 청구금액이 미화 5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분쟁사건도 신속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신속절차에서는 판정부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구두심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심리를 1회로 제한하며 중재판정도 심리 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내리도록 규정하는 등 소액사건 이용자들을 위해 신속한 절차진행을 제공하고 있다.

4) 권고하는 조정 및 중재조항

당사자는 장래분쟁의 해결을 담보하기 위해 CAMCA가 권고하는 조정조항과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에 이들 조항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당사자는 동 현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AMCA가 권고하는 부탁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정이나 중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CAMCA에서는 장래분쟁은 물론 현존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조항·중재조항·조정부탁합의서·중재부탁합의서 등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쟁해결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들 조항중 조정과 중재조항이 연계된 분쟁해결조항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⁴⁵⁾

중재조항에 추가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① 중재인의 수(1인 혹은 3인) ② 중재지(도시/국가) ③ 분쟁사건에 적용될 실체법(준거법) ④ 언어 등이다.

(5) CAMCA 모델의 시사점

동북아의 경제대국인 한·중·일 3국은 산업인구와 국토면적은 물론 무역, 투자 등 경제거래의 규모면에서 EU 및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3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물품과 자본의 이동이 용이하고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의 FTA 체결을 상정할 때 NAFTA의 CAMCA 모델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생각된다. 이는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경제권이 앞으로 역내간 경제교류의 증대에 따라 무역과 투자 등 경제거래가 현재보다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북미간 및 북일간에 수교가 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경제교류 또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AMCA식 사적 당사분쟁의 해결제도 도입은 그 당위성이 있고 법적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⁴⁶⁾

45) 조정과 중재가 연계된 분쟁해결조항 : The parties agree that they will endeavor to settle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which they are unable to settle through direct discussions, by mediation administered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under its rules before resorting to arbitration. Thereafter,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and judgment o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thereof. The requirement of filing a notice of claim with respect to the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submitted to mediation shall be suspended until the conclusion of the mediation process.(당사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혹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혹은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에 부탁하기 전에 CAMCA의 규칙에 따라 CAMCA에 의해 관리되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이후 이 계약으로부터 혹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혹은 클레임은 CAMCA의 규칙에 따라 CAMCA에 의해 관리되는 중재에 의해 해결되며 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대한 판결은 관할권을 가지는 어떤 법원에도 등록될 수 있다. 조정을 위해 부탁된 분쟁, 논쟁 혹은 클레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서 제출에 관한 절차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정지된다.)

CAMCA식 공동분쟁해결 방식을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에 도입한다면, 먼저 3국의 중재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 조정·중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3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JCAA),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간에는 이미 중재협정 체결을 통해 중재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분쟁해결기구 설립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

다음으로 3국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에의 가입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1961년에, 한국은 1973년에, 그리고 중국은 1987년에 각각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3국 모두 ICSID협약의 당사국이므로 이에 관한 기본적 법적환경은 충족된 상태다.

만약 동북아에도 공동분쟁해결기구가 창설된다면 동 기구의 운영은 CAMCA와 같이 동북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무역, 투자 등 사적 상사분쟁은 한·중·일 3국의 어느 중재기관에도 접수될 수 있으며 3국이 공동으로 제정한 조정 및 중재규칙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V. 결 론

국가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강화·결집될수록 그에 따른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간 경제협력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제협력과 교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에 관심을 가질 것과 이 분야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 이들 분쟁해결에 실무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FTA나 투자관련 협정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는 ICSID 이다. 한편, UN차원에서 범세계적 이용을 위해 고안된 UNCITRAL 중재규칙도 FTA 및 투자관련 협정에서 분쟁해결 절차에 이용되는 주요한 규칙이 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각국의 중재기관들이 UNCITRAL 중재규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UNCITRAL 중재규칙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투자분쟁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불리하게 중재판정이 난 당사자가 자진 이행을 하면

46) 한·중·일 3국의 중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분쟁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10여년 전 일본학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의 松浦 馨 교수는 한·중 양국 수교(1992.8) 1년이 지나 한·중·일 3국의 중재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중재심포지엄」에서 공동분쟁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앞으로 국제상사중재는 기관중재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중·일 3국의 중재기관이 협동하여 역내의 사적 분쟁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993년 11월 24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및 한국중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 자료 참조).

중재는 성공적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자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중재판정에서 이긴 당사자는 뉴욕협약이나 ICSID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FTA가 체결되거나 투자관련 협정이 체결되어 역내 및 해당 국가 간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 그에 비례하여 다양한 사적 상사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때 해당 국가 중재기관 간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분쟁해결 촉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중재기관간의 분쟁해결 노력은 중재협정 체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어려운 '중재지 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지를 피신청인 국가로 하는 중재협정이 체결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분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증거제출이나 중재판정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중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제3국에서 중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한·오스트리아협정의 방식은 제3국 중재, 분쟁해결 수단의 다양성 및 UNCITRAL 중재규칙이라는 국제적 규칙의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FTA하의 중재기관간 협력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체결은 물론 한·중·일 3국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해당국가의 중재기관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발효 중인 칠레 및 싱가포르의 중재기관과도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집중 분석한 NAFTA하의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창설된 공동분쟁해결기구인 CAMCA식 분쟁해결방식을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앞으로 체결하는 FTA하의 분쟁해결의 모델로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모두 뉴욕협약 및 ICSID협약의 당사국이자 3국 중재기관 간에는 중재협정을 통해 이미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 이전이라도 공동분쟁해결기구의 설립과 운영방안을 3국의 중재기관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 해의」, 대한상사중재원, 1985.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 김상호, 「클레임과 무역」, 두남, 2002.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 문준조, 「중국투자의 법적 제문제」, 행법사, 1991.
- 장문철·정선주·강병근·서정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수용론」, 세창출판사, 1999.
- 김상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투자분쟁의 해결”, 「국제상학」, 제18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 _____, “한국의 지역경제협력과 사적분쟁의 해결”, 「국제경영논집」, 제19집, 부산외대 국제통상연구소, 2004.
- 김창남, “한일 FTA 구상과 한일해협경제권”, 「우리나라의 FTA 정책과 부산지역경제」, 부산외대 국제통상연구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자료, 2002.12.6.
-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2005.
- _____, 「외국중재법규집 제1집」, 2005.
-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주식 중재법」, 2005.
- Albert Jan van den Berg,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The Hague : T. M. C. Asser Institute, 1981.
- Hans Smit, Vratislav Pechota, The World Arbitration Reporter Vol.1, New York : Transnational Juris Publications, Inc., 1991.
- Piter Sanders,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ICCA Yearbook Vol. II, Deventer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77.
- William F. Fox, Jr., International Commercial Agreement, Deventer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8.
- Wolfgang Peter, “Arbitration and Renegoti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중재관련 국내외 법규, 협정 및 FTA 자료〉

- 한국 중재법(개정 1999.12.31. 법률 제6083호)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2000.4.27. 대법원승인)
- 한·일 중재협정문(1973)
- 한·헝가리 중재협정문(1990)
- 한·루마니아 중재협정문(1991)
- 한·불가리아 중재협정문(1991)
- 한·폴란드 중재협정문(1992)
- 한·중국 중재협정문(1992)

- 한 · 베트남 중재협정문(1993)
 - 한 · 러시아 중재협정문(1994)
 - 한 · ICC 중재협정문(1978)
 - 한 · 스웨덴 중재협정문(1995)
 - 한 · 싱가포르 중재협정문(1995)
 - 한 · 오스트리아 중재협정문(1996)
 - 한 · 중 무역협정문(1992)
 - 한 · 중 투자보장협정문(1992)
 - 한 · 소 무역협정문(1990)
 - 한 · 소 투자보장협정문(1991)
 - 한 · 홍콩 투자보장협정문(1997)
 - 한 · 일 투자협정문(2003)
 - 한 · 베트남 개정 투자보장협정문(2004)
 - 한 · 칠레 FTA(2004)
 - 한 · 싱가포르 FTA(2006)
 - CAMCA 조정규칙 및 중재규칙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워싱턴협약)
 -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뉴욕협약)
 - 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1977(prepared by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d USS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www.fta.go.kr/fta_korea/policy.php
- www.bcicac.com
- www.adr.org

ABSTRACT

Settlement of Private Commercial Disputes under the FTA

Sang-Ho Kim

This age is called the age of global trade,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a forerunner in promoting the global free trade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s the global level.

On the other h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is appearing, saying that promotion by WTO takes too much time. As is known to everybody, Europe is on the way of integrating member states through EU not to mention economic cooperation. Even in Asia such tendency is shown through ASEA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share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Under the situation,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conclusion of investment agreements including FTA. If the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ould be realized, it would promote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settlement of private commercial dispute including investment dispute arising from the FTA and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dispute is quite different from an ordinary commercial dispute arising from commercial transactions in view of disputing parties, applicable laws and rules, etc. Therefore it is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parties interested in investment under the FTA as well as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should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settlement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arising therefrom.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acilities for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who qualify as nationals of other member countries. All contracting states of the ICSID Convention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also applicable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o be rendered under the FTA. As to applicable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may be required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FTA. This Rules ha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bitral organizations although it was developed primarily for use in ad hoc arbitration.

The promotion of arbitral cooperation may be realized through agreements between arbitral institutions. Especially under the NAFTA system, a central common system was established to resolve jointly private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such free trades by the initiative of arbitral organizations among the member countries. It is called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which may be a good example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the privat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other relevant countries.

Key Words : Free Trade Agreement,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cooperation between arbitr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rules